「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박 은 희

2. 제안이유

○ 괴평·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고아읍 괴평리에 편입된 구역에 관한 사항(안 별표)

1) 고아읍 송림리 108필지(48,263㎡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고아읍과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괴평·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과 사업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정비하고, 사업구역에 맞게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고아읍 송림리 일부를 괴평리로 편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, 각종 공부 및 행정정보 등의 정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자료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, 변경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없 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Ⅶ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